미얀마연방공화국

연방법무처

연방 법무처의 역할

목차

1. 소개

2. 역사적 배경

3. 연방법무처법

4. 연방법무처장의 의무

5. 연방법무처장의 권한

6. 법무감의 의무와 권한

7. 법제관의 기능과 의무

8. 연방법무처

9. 입법초안작성부

10. 법률자문부

11. 검찰부

12. 행정부

13. 결론

연방법무처 모토: 법률 직은 고매한 직

연방법무처법에 따른 연방법무처의 역할

1. 소개:

역사란 현 세대에게 새로운 통찰과 인식을 주며 미래세대에게는 새로운 사고와 비전을 창출하는 학문이다. 역사가 동시대의 경험과 발전과 접목된다 면,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행정, 법제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미얀마 연방공화국에서 연방법무처의 시작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삶의 경험이 더해진 조직적인 구조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의 기원의 구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며, 어떻게 역사의 수레 바퀴가 굴러가는지를 보는 것과, 잘 숙성된 법을 만드는 경험을 하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연방법무처의 형성, 그 역사와 법, 구조,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법조직의 운영에 끼친 공헌은 참으로 흥미롭고 소중하다.

이 문서의 목적은 다양한 주제 하에서 이러한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다. 연 방법무처법에 따라 연방법무처의 역할은 주제별, 역사적 배경, 연방법무처법 그리고 다양한 법무처 부서로 나누어져 논의될 것이다.

역사적 배경

1826년 최초의 미-영 전쟁이 종식된 후, 영국은 민사, 형사에 대한 법률 시 스템을 미얀마에 도입했다. 그 시스템은 영국연방법체계의 모방이라기보다 는, 인도로부터 가져온 영국연방법체계를 수정한 것이었다. 공공검사들과 정 보변호사들은 이 수정된 영국연방법체계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혹은 국가 를 위하여 사건을 도맡도록 임명받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버마정부법이 1935년에 공표되었다. 이 법의 12장에 는, 법무감(Advocate General) 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법무감의 권한 하에 서, 정부변호사들은 형사,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혹은 정부 를 대신할 것을 임명받았다.

1948년 미얀마가 독립을 다시 쟁취한 후, 미얀마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조 언을 얻어 1947 미얀마(당시는 버마) 연방 헌법에 따라 법무처장을 임명하였 다. 법무처는 1948년 연방법무처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법무처장(Attorney General), 법무차장(Assistant Attorney General), 정부변호사(Government Advocates), 법률초안작성자들(legal draftmen)이 임명되었다.

역사는 정체되는 법이 없다. 1962년 혁명위원회가 국가책임들을 이어받았 고, 법무처장은 1962년 3월 7일, No. 15 선언 하에 임명되었다. 그의 주된 역 할은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해 정부를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나서서 혁명위원 회와 정부에게 법률자문은 제공하는 것이었다. 법무처는 계속 존속해나갔다. 1972년 3월 5일, No. 97 선언이 발효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이 철폐되고 새 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그 후, 1972년 3월 31일, No 2 공시 (Notification)에 의해 법무처가 구성되었다. 법무처장(Attorney General), 법 무차장(Deputy Attorney General), 3명의 법무보좌관(Assistant Attorney General)의 직위가 생겨났다. 검사, 법률자문제공, 입법초안작성, 법률번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법무처가 생겨났다. 1974년 미얀마 연방 사회 공화국이 1974년 헌법에 따라 세워지면서 역사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피투 흘루토는 인민 법무위원회(Council of People's Attorneys) 를 조직했다. 또한 인민 법무위원회는 국가/부서법제실과 지방법제실을 각각 조직했다. 이러한 법제실을 감독하기 위해서, 중앙 법제실이 세워졌고 법무

처를 대체했다.

국가 법률 명령 복원 위원회가 1988년 국가의 책임을 맡았을 때, 법무처법 이 1988년 9월 26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법무처장, 법무차장이 임명되 었다.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가 2001년 2월 26일 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 용하였다. 법무처법은 1988년 공포된 후, 법무처의 발족(creation)에 실제적이 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적용되었다. 법무처는 여러 국가/부처와 지방 법제실 의 총괄법제실로서 만들어졌다. 2001 법무처법이 역사, 경험, 실제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법무처장과 법무차장은 임명되었다. 2001 법무처법은 2003년 1월 2일에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명의 법무차장이 임명되었다.

연방법무처법

현재 미얀마 공화국 헌법은 2008년 5월 29일 국민투표로 채택되었다. 연방 법무처법은 2010년 10월 28일 미얀마공화국 헌법 443장에 따라 공포되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분류하자면, 제목, 시행과 정의, 연방법무처의 형성, 그 외 다양한 수준의 법부실들, 연방법무처장, 법무차장, 지역 혹은 주 법무감, 법제실의 기능과 의무와 그 밖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 법 하에 따 라 연방법무처장과 법무차장은 임명된다. 연방 법무처장은 연방정부의 구성 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할 책임을 진다. 연방법무처장과 법무차장의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임기도 이와 동일하다.

지역 혹은 주 장관(Chief Minister of the Region or State)은 미얀마 공화 국 헌법 266장에 따라 법률자문을 구하고 법률관련 의무를 할당하기위하여 지역 혹은 주 변호국장(Advocate General of the Region or State)에게 의무 를 임명하고 부여할 권한이 있다라고 공포되어있다. 이리하여, 지역 혹은 주 법무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연방 변호국장 법 22장에 기술되어있다. 이것 은 이전의 법무처법과는 다른 구별된 법이다.

연합 법무처장의 역할

12장에 따라 연방법무처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 연방정부 구성원의 의무를 수행할 것

(b) 피당소 흐루토 또는 피투흐루트 혹은 아미타 흐루토 세션에서 법률사항 과 관련된 특이상황을 종종 제출할 것

(c) 대통령, 피당소 흐루토 의장, 피투흐루트 의장, 아미타 흐루토 의장, 피당 소 수준의 모든 기관, 연합부, 나피토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법률자문을 제 공할 것

(d) 연방 대법원 관할 하의 연방정부와 관련된 원(original)재판, 항소, 개정, 특별항소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

(e) 대법원에 영장 발급 신청 시,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 (f)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할 것

(g)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할 것

(h) 연방정부가 피고 혹은 원고로 관련된 원(original)재판, 민사사건, 민사항 소사건, 민사개정(revision)사건, 특별 민사항소사건에 대해 연방정부를 대신 하여 수행할 것

(i) 연방정부와 관련된 경우, 지역 혹은 주 고등법원에서 통과된 명령 혹은 결정, 판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연방 대법원에 항소 혹은 개정제기

(j) 법률번역

(k) 국제, 지역,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연방정부 관련 기관에게 법률 자문 제공

(i) 양해각서(MOU), 협정각서, 지역과 외국 투자기구와 그 외 다른 기구 (m) 법률문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역 혹은 주 법무감의 요구가 있을 시,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

(n) 연방법무처와 그 외 다양한 법제실 소속 법제관을 지도, 감독할 것

(o) 규정된 방식에 따라 연방법무처와 관련된 법안을 피당소 흐루토에게 제 출할 것

(p) 헌법 혹은 기존 법률과 규칙의 조항, 이 법 하에 발표된 절차, 명령에 규

정된 다른 의무를 이행할 것

미얀마 공화국 헌법 296장에 따라, 미얀마 대법원은 인신보호영장, 집무집 행영장, 금지영장, 심문영장, 이송명령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지닌다. 영장발 부에 관하여는 연방법무총장이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책임을 지닌다 라고 연방법무처법 12장 하부 절에 규정되어있다.

이 의무는 연방 법무처장의 독특한 의무(unusual duty)라고 불릴 수 있다.

연방 법무총장의 권한

연방법무처장의 권한은 13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있다:

(a) 법무차장의 의무과 권한을 결정할 것

(b) 대법원에서 제기된 형사소송의 경우, 전 소송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혐의이든지 법에 따라 이행할 것

(c)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형사사건을 종결짓는 판결내리기

(d) 지역 혹은 주의 고등법원에서 통과된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에 따라 대법원에 무죄판 결에 대한 항소 제기

(e) 법률사항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명령, 결정, 지시, 활동, 집행, 그리고 다른 문서를 관련 연합정부 기관으로부터 요 청하기

(f) 필요한 경우, 지역 혹은 주에 속한 다양한 법제실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 련 지역 혹은 주 법무감 지도 감독하기

(g) 공공자선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규약에 따라 문서 로 동의서 제출

상기 언급된 연방법무처장 권한에서, 13장 하위절의 (b), (c), (d), 와 (g) 항은 연방법무처장이 법제실에 위임할 수 있는 일반 권한이다. 그러나 13장

하위 절 (e) 항은 일반권한에 추가된 특별권한이다. 법률사항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경우, 관련 정부부처와 기구로부터 필요한 명령, 결정, 지시, 활동, 절차와 다른 문서를 요청하는 것은 연방 법무처장 혹은 위임된 법제실의 권 한이다. 이 장에 따라 연방 법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문서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이 법률의 상당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방법무처장은 연방법무 처, 지역 혹은 주 법무감실, 자체행정부법제실, 자체행정지역법제실, 지역법 제실 그리고 지방법제실을 구성할 권한을 지닌다.

법무감의 의무와 권한

지역 혹은 주 법무감의 의무과 권한은 연방법무처법 26장과 27장에 규정 되어있다.

26장은 지역 혹은 주의 법무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연방정부 구성원의 의무를 수행할 것

(b) 관련 지역 혹은 주 흐루토 세션에서 법률사항과 관련된 특이상황을 종종

제출할 것

(c) 관련 지역 혹은 주 장관, 국가 흐루토, 지역 혹은 주 수준의 기관, 지역 혹은 주부, 혹은 자체 행정 부서나 지역의 수뇌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

(d) 관련 지역 혹은 주 고등법원의 관할하의 연방정부와 관련된 원(original) 재판, 항소, 개정, 특별항소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

(e)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할 것 (f)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할 것

(g) 연방정부가 피고 혹은 원고로 관련된 원(original)재판, 민사사건, 민사항 소사건, 민사개정(revision)사건, 특별 민사항소사건에 대해 연방정부를 대신

하여 수행할 것

(h) 관련 지역 혹은 주 고등법원에서 통과된 명령 혹은 결정, 판결에 대해 정부와 관련된 사건의 항소 혹은 개정을 대법원에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항소 혹은 개정을 제기할 것을 연방 법무처장에게 제안하기(submitting)

(i) 필요한 경우, 연방법무처장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기 (j) 그에게 부여된 의무과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법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내리기

(k) 일정 2에 규정된 지역 혹은 주 흐루토 입법리스트에 포함된 사항에 대 해, 관련 흘루토에서의 입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법률자문을 제공하기

(l) 관련 지역 혹은 주의 다양한 법부실을 감독하기

(m) 연방법무처장 혹은 관련 지역 혹은 주 장관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법에 따라 실행할 것

(n) 기존 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의무를 이행할 것

27장은 지역 혹은 주 법무감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대법원에서 제기된 형사소송의 경우, 전체 소송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혐의이든지 법에 따라 소송 철회를 이행할 것

(b)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형사사건을 종결짓는 판결내리기

(c) 지역 혹은 주의 대법원의 다양한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 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에 따라 지역 혹은 주 고등법원에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d) 법률사항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명령, 결정, 지시, 활동, 집행, 그리고 다른 문서를 관련 연합지역 혹은 주 수준 기 관으로부터 요청하기

법제실의 기능과 의무

법제실의 기능과 의무는 34 - 36장에 언급되어있다. 이 법제실의 여러 다

양한 의무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규정에 따라 연방 법무처장 은 그 의무과 권한을 법제실에 위임한다. 이 법제관들은 실무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의무도 지닌다. 이것은 독자에게 연방법무처의 기능에 대한 통찰을 주고자 설명될 것이다.

35장에 따르면, 연방법무처장은 연방법무처의 법제관에게 법률서적과 법률 메뉴얼을 편찬하고 출판하기 위해 의무를 부여한다. 이 직무는 쉬운 일이 아 니며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독서를 요구하는 지루한 작업 요구한다. 빕무실 의 실무적 일은 16가지 의무로 규정된다.

그 의무들은 36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a) 관련 정부부처과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법률자문 제공하기

(b) 기소 전, 법률과 조응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법률자문 제 공하가

(c)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담당하기

(d) 정부를 대신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하기(appearing in criminal cases)

(e) 연방정부가 피고 혹은 원고로 관련된 원(original)재판, 민사사건, 민사항 소사건, 민사개정(revision)사건, 특별 민사항소사건에 대해 연방정부를 대신 하여 수행할 것

(f) 법제실에 제공한 법률자문을 관련 검사기구가 이행하는지를 검토하고 진 술(제안)하기

(g) 검사기구에 의한 구금요청이 기존 법률, 명령, 지시와 조응하는지 검토하 기

(h) 검사기구에 의해 관련대법원에서 기소하기 전에 적절한 해석을 위해 사 건을 검토하기

(i) 처리할 수 없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조항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하기 (k) 형사절차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기소되기 전 기소된 자가 기소상태에서 승인으로 사면제공 여부를 형상절차규정에 따라 결정하

기

(l)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형사죄로 기소된 가난한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기

(m) 연방공화국과 관련된 경우,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에 개정을 제기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원에 개정 제기하기

(o)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통과된 사면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안하기

(p) 법무처장과 관련 지역 혹은 주 법무감에 의해 부여된 다른 의무를 실행 하기

연방 법무처

연방 법무처의 장은 장관(Director-General)이며 또한 연방정부에 의해 임 명된 서비스인사의 장이다. 연방법무처의 직접감독 하에 조직된 부서는 4개 이다. 이 4부서를 총괄하는 일에 더하여, 연방법무처는 미얀마 전체의 모든 법제실의 법적, 행정적 사항을 총괄하는 지휘부서이다.

입법초안작성부

연방법무처장은 연방법무처법의 12장 하위절 (j)항 에 따라 법을 번역할 의 무를 지니며, 같은 법 12장 하위 절 (q)항에 따라, 정부에 의해 부여된 다른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연방법무처법에 따라, 연방법무처장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 에 의해 최초로 작성되고 보내진 초안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 수행, 기존 법률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수정, 추가, 대체를 위해 보낸 초안을 연방법 무처장의 지침에 따라 검토하기, 이와 유사하게, 규칙, 절차, 공지, 명령, 지 침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법률번역 또한 이 부서에서 담당한다.

법률자문부

대통령이 미얀마 공화국 헌법 237장 하위 절 에 따라 법무처장을 지명한

후, 법률자문을 구하고 법률의무를 할당하기 위해, 헌법 240장 하위절 (f) 항

에 따라 연방법무처법을 제정했다. 연방 법무처법 12장 하위 절 (c) 항에 따 라, 연방법무처장은 대통령, 피당수 흐루토 의장, 피투 흐루터 의장, 혹은 아 미로타 흐루타 의장, 피동수 수준의 기관, 국가부처 혹은 나피토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12장 하위 절 (k)항에 따라 국제, 지역 혹은 양자, 다자 조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정부 수준의 기관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12장 하위 절 (l) 항에 따라 MOU, 협정각서, 지역 혹은 외국투자기구 와 다른 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가 수준의 기관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12장 하위 절 (m) 항에 따라 법률문제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혹은 주의 법무감의 요청이 있을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연방법무감의 권한은 13장 하위 절에 따라 법률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게 필요한 명령, 결정, 지시, 활 동, 절차, 그리고 다른 문서를 요청하는 것, 13장 하위 절에 따라 필요한 경 우, 지역 혹은 주에 소속된 다양한 법제실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 혹은 주 의 관련 법무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무감의 의무과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법률자문부 서는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이 3개의 부서는 국제법 ASEAN 법제실, 상업계약실, 일반법률자문실로 구분된다.

검찰부

이 부서는 법무처에서 가장 오래된 부서이다. 이 부서는 구성된 이래로, 국가를 대신하여 검찰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부를 대신하여 형사, 민사사건 의 항소를 담당해왔다. 법무 장관의 의무과 권한은 이전 법무처법에 포함되 어있듯이, 연방법무처법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그 의무와 권한은 다음 과 같다: 연방법무처법 12장 하위절 (d) 항에서와 같이, “연방 대법원 관할 하의 연방정부와 관련된 원(original)재판, 항소, 개정, 특별항소에 대해 국가

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 12장 하위 절 (e)항과 같이 “대법원에 영장 발급 신

청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할 것”, 12장 하위 절 (f) 항과 같이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할 것”, 12장 하위 절 (g)항과 같이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형사사건을 수행할 것”, 12장 하위 절 (h)항과 같이 “연방 정부가 피고 혹은 원고로 관련된 원(original)재판, 민사사건, 민사항소사건, 민사개정(revision)사건, 특별 민사항소사건에 대해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수 행할 것", 12장 하위 절 (i) 항과 같이 ”연방정부와 관련된 경우, 지역 혹은 주 고등법원에서 통과된 명령 혹은 결정, 판결에 대해 연합 대법원에, 필요 한 경우, 항소 혹은 개정제기,“ 13장 하위 절 (b) 항과 같이 ”대법원에서 제 기된 형사소송의 경우, 전 소송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혐의이든지 법에 따라 이행할 것,“ 13장 하위 절 (c)항과 같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형사사건을 종결짓는 판결내리기,“ 13장 하위 절 (d)항과 같이 ”지역 혹은 주의 고등법원에서 통과된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대법원에 법에 따라 무죄판결에 대 한 항소 제기“

이 지점에서 연방법무처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을 언 급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 새로운 국면이란 국제 법률 분야에서 연방법무처 가 미얀마 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일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법무처 장은 미얀마를 대신하여 다양한 법제관들과 함께 세계 법정과 포럼에 출두 하고 참석하여 유엔과 다른 포럼에 있는 미얀마 정부부처에게 조언을 제공 했다. 법무처는 그 시작 이래도 오랜 성장과정을 거쳤다.

연방법무처장은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법무처를 조직했 고, 연방법무처법 3장에 따라 지역 혹은 주 법무감실, 자체행정부법제실, 자 체행정지역법제실, 지역법제실, 기타 다른 법제실을 조직했다. 그 의무를 위 임함에 있어서, 연방법무처장은 법제관들에게 36장 하위 절 (d)항과 (e)항에 따라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36장 하위 절 (f), (g), (i), (j), (k) 항에 따라 다른 형사 그리고 법률사항을 수행하도록 위임했다.

36장 하위 절 (l) 항에 따라, 법부담당관은 사형에 상당하는 형사범죄로 기 소된 가난한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책임을 지닌다. 법무 담당관은 36장 하위절 (m) 항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를 감독한다. 그리고 36장 하위 절 (n) 항에 따라 개정

을 수행하고, 36장 하위 절 (o) 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통과된 무죄판결에 항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규정에 따라 제안한다.

행정부

위에 언급된 사항을 보면 연방법무처는 효율적인 운영을 요하는 큰 조직 처럼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으로 인해, 연방법무처는 행정부를 설치하 여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행정부 안에는, 민간서비스인사업무 와 조사부, 교육정보기술부, 예산회계부, 연구실행부가 조직되어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이 부서들은 민간서비스업무, 조사, 예산과 회계, 실행과 건설(building), 훈 련, 법률조사, 법학서적 편찬과 출판, 정보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실도 연합법무처에 두고 있으며, 앞선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

역사란 실로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대로 가득 찬 분야이다. 연방법무 처법의 법률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법이 법방장관실의 다양한 전환들과 법률 역사 경험의 결과이자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연방법무처법은 각 시대의 법제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체계적, 조직적, 효율적으로 개정되어왔다. 이 법은 법무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기위해서 최고의 법률시스템을 실행할 것을 반영하며 공포되었다. 이 법은 명목상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연방법무처 관할 하에서 다양한 부서에 의한 법의 이행을 통해 실천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연합법무처의 모토는 “법률 직은 고매한 직” (The Legal Profession is a Noble Profession.)이다. 고매함으로 이 직을 완수함으로써, 가치 있는 일이 창출될 것이며, 모든 법제관들은 연방법무처법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귀함을 유지할 것을 배울 것이다.